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2. 7.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I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과 제안경위¹⁾

- 관련 법령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조례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의 '22년 7월 13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조 8,132억원 대비 13.9%, 6조 3,709억원을 증액한 52조 1,841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①=②+③	당초예산 ②	간주처리 ③			
	①=②+③	②	③	④	⑤=④-①	⑤/①
총 계 규 모	45,813,259	44,219,048	1,594,211	52,184,167	6,370,908	13.9
일 반 회 계	32,473,709	31,342,459	1,131,250	37,955,678	5,481,969	16.9
특 별 회 계	13,339,549	12,876,588	462,291	14,228,489	888,939	6.7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5조 4,819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 ①'2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5조 12억 1,1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요청하고, ②세외수입 857억 3,600만원과 ③지방교부세 479억 3,200만원, ④국고보조금등 3,502억 6,000만원을 증액요청하고, ④보전수입등 중 전년도이월금 △139억 4,000만원과 ⑤내부거래 △1,400만원 등을 감액하고자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8,889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표 2-2〉 세입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예 산 액	구 성 비	예 산 액	구 성 비	증 감 액	증 감 률
총	계	52,184,167	100.0	45,813,259	100.0	6,370,908	13.9
	지 방 세 수 입	23,095,574	44.3	23,095,574	50.4	-	-
	세 외 수 입	4,532,975	8.7	4,440,509	9.7	92,466	2.1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418,021	6.5	3,315,120	7.2	102,900	3.1
	임 시 적 세 외 수 입	646,085	1.2	655,780	1.4	△9,695	△1.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68,869	0.9	469,608	1.0	△739	△0.2
	지 방 교 부 세	255,271	0.5	207,338	0.5	47,932	23.1
	보 조 금	8,722,136	16.7	8,402,736	18.3	319,400	3.8
	국 고 보 조 금 등	8,722,136	16.7	8,402,736	18.3	319,400	3.8
	시·도비보조금 등	-	-	-	-	-	-
	지 방 채	1,506,949	2.9	1,708,895	3.7	△201,946	△11.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071,261	27.0	7,958,206	17.4	6,113,054	76.8
	보 전 수 입 등	6,659,289	12.8	1,280,264	2.8	5,379,025	420.1
	내 부 거 래	7,411,971	14.2	6,677,941	14.6	734,029	11.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표, p.8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45조 8,132억 5,900만원)보다 13.9%, 6조 3,709억 8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5조 4,819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순세계잉여금)** 1조 6,819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 1조 1,435억 8,0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지방세 전출** 5,398억 1,4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 2,585억 7,900만원, **담배소비세 전출** 240억 1,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법정사항을 정산하고자 증액 편성 요청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742억 4,4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을 포함하여 32개 실·국·본부의 364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의 190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8,889억 3,900만원을 증·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3〉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 : 백만원, %)

분 야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 감 륜
	예 산 액	구 성 비	예 산 액	구 성 비		
총 계	52,184,167	100.00	45,813,259	100.00	6,370,908	13.91
일반공공행정	10,754,034	20.61	7,660,130	16.72	3,093,903	40.39
공공질서및안전	1,635,582	3.13	1,633,512	3.57	2,070	0.13
교육	5,102,762	9.78	4,280,263	9.34	822,499	19.22
문화및관광	862,401	1.65	847,992	1.85	14,409	1.70
환경	2,358,035	4.52	2,121,576	4.63	236,459	11.15
사회복지	16,816,112	32.22	16,418,798	35.84	397,314	2.42
보건	1,108,988	2.13	742,529	1.62	366,458	49.35
농림해양수산	101,064	0.19	100,136	0.22	927	0.9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77,461	1.49	751,365	1.64	26,095	3.47
교통및물류	7,518,228	14.41	6,303,584	13.76	1,214,644	19.27
국토및지역개발	2,896,166	5.55	2,736,354	5.97	159,811	5.84
과학기술	1,843	0.00	1,843	0.00	-	-
예비비	150,332	0.29	143,949	0.31	6,383	4.43
기타	2,101,153	4.03	2,071,222	4.52	29,931	1.4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표중 기능별, p.9~11

Ⅲ .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1) 지난해회계연도 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지난 '2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결산상 잉여금중 ①**순세계잉여금** 9,464억 4,400만원과 ②**법정잉여금** 4조 547억 6,6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6조 2,127억 9,900만원으로 이월액(명시이월 852억 2,500만원, 사고이월 1,812억 7,4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750억 9,700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5조 8,712억 1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 8,712억 100만원중 추경재원(7,355억 1,400만원)과 법정정산분(1,344억 7,600만원)으로 8,699억 9,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의결한 바 있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나머지 세계잉여금 5조 12억 1,100만원에 대해 **순세계잉여금**(9,464억 4,400만원)과 **법정잉여금**(4조 547억 6,600만원)으로 각각 세입처리하려는 것임
- 관련 법령은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의무경비를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는 법정정산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5조 12억 1,100만원)중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1조 4,007억 6,5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8,224억 800만원), ③타 회계전출(1,496억 3,600만원) 등 이른바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 ④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1조 6,819억 5,800만원)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세계잉여금중 법정정산을 위해 세입예산에 **법정잉여금** 4조 547억 6,700만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세입처리 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이며
- 법정정산분을 차감한 가용재원(9,464억 4,400만원)도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 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 · 감	추경 (안)	주 요 증 감 내 역	
잉 여 금		869,990	5,001,211	5,871,201	순 세 계 잉 여 금 · 법 정 잉 여 금	5,001,211
	순 세 계 잉 여 금	735,514	946,444	1,681,958	순 세 계 잉 여 금	946,444
	법 정 잉 여 금	134,477	4,054,767	4,189,244	법 정 잉 여 금 소 계	4,054,767
					조 정 교 부 금 교 부	1,143,580 ^{주1)}
					재 정 보 전 금 교 부	92,131 ^{주2)}
					징 수 교 부 금 교 부	165,053 ^{주3)}
					교 육 청 전 출	822,407 ^{주4)}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89,602 ^{주5)}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20%)	37,135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18,567
					소 방 특 별 회 계 전 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4,3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 정 안 정 화 계 정)	1,681,958 ^{주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1년도 서울시 보통세 예결산 차액의 22.6%인 1조 2,376억 8,542만원 중 '22년 제1회 추경에 기 반영한 941억 500만원을 뺀 1조 1,435억 8,042만원

주2) '21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초과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반영

주3) '21년 시세입 초과징수분의 교부금을 '22년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추경 반영

주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①지방세 정산분(5,398억 1,473만원), ② 담배소비세 정산분(240억 1,292만원), ③지방교육세 정산분(2,585억 7,997만원)

주5)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 '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예결산 차액의 70%인 1,299억 7,372만원 중 '22년 제1회 추경에 기 반영한 403억 7,136만원을 뺀 896억 200만원

주6)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 1조 6,819억 5,800만원

2)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1조 8,024억 8,900만원)보다 857억 3,6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1,002억 7,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145억 4,8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800만원)에 대해 증·감 조정 요청한 것임
-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재산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정예산(1,639억 3,100만원)보다 △96억 9,600만원 감액하고 **사용료수입**중 도로점용료를 기정예산(885억 1,400만원)보다 △155억 4,6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사업수입**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기정예산(9억 1,600만원)보다 600억원, **이자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539억 9,600만원)보다 579억 8,100만원을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기타수입**중 그외수입을 기정예산(1,805억 4,500만원)보다 △158억 5,6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하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사유재산 무단점유로 발생된 변상금 800만원을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3)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의 대상을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만 교부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2,066억 5,800만원)보다 23.1%, 479억 3,200만원 증액한 2,545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보통교부세 516억 4,9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 △37억 1,6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교부세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예산(안)
지 방 교 부 세	206,658 ^{주1)}	47,932	254,591
보 통 교 부 세	168,930	51,649	220,579
소 방 안 전 교 부 세	35,898	△3,716	32,181

주1) 특별교부세 18억 3,000만원 간주처리

-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4억 2,000만원(2차 간주)
-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 1억원(2차 간주)
- 코로나19 검사소 설치 운영 2억 8,000만원(3차 간주)
- 산불방지대책지원 1억 1,000만원(4차 간주)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지원 3,000만원(7차 간주)
- 폭염대책비 8억 9,000만원(12차 간주)

-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1,689억 3,000만원)보다 30.6%, 516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 '22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당초 내시보다 36억 7,400만원 증액된 1,726억 400만원으로 확정 통보하였으나
 - 회계연도 개시이후 행정안전부가 지난 '21회계연도 보통세 정산분(153억 4,500만원)을 통보하고, 정부의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금액(2,052억 3,400만원)을 변경통지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1,689억 3,000만원)보다 516억 4,900만원 증액된 2,205억 7,900만원으로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표 3-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보통교부세 교부 내역 통지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	'22년도 확정통보액 ('21.12.30)	'21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22. 4. 7)	'22년도 교부결정변경액 (정부 추경분) ('22. 6.14)	'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액)	증 · 감
㉠	①	②	③	㉡=㉠+㉢	㉣=㉡-㉠
168,930	172,604	15,345	205,234	220,579	51,649

-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35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2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46억원 감액된 312억 9,800만원으로 통보하였고,
-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21년도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8억 8,300만원)을 추가 교부하는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당초(358억 9,800만원)보다 △37억 1,700만원 감액된 321억 8,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3-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내역 통지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①	'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 ('21.12.29) ②	'21년도 세계잉여금 소방안전교부세 정 산 분 ('22. 4. 12) ③	'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 ④=②+③	증 · 감 ⑤=④-①
35,898	31,298	883	32,181	△3,717

4)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511)의 경우, 기정예산(6조 877억 7,400만원)보다 5.8%, 3,502억 6,000만원 증액된 6조 4,380억 3,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국고보조금**(511-01)은 기정예산(5조 7,763억 9,200만원)보다 3,476억 9,600만원 증액된 6조 1,240억 8,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중앙정부의 내시와 정부 추경 등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1,742억 4,400만원), **전기차 보급**(721억 3,000만원), **기초연금 지급**(337억 5,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급여지원**(330억 4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70억원)등 43개 사업에 대해 3,634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고,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57억 5,600만원), **아동수당 지원**(△30억 3,600만원) 등 14개 사업에 대해 △157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의 경우, 마을기업 육성에 1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금**(511-03)은 11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고자 기정예산(2,724억 1,900만원)보다 0.9%, 23억 7,100만원이 증액된 2,747억 9,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5A〉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등	6,087,774	350,260	6,438,035		
국 고 보 조 금	5,776,392	347,696	6,124,088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66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69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678
				◦영유아 보육료 지원	7,75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120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3
				◦아동수당 지원	△3,036
				◦첫만남 이용권 지원	△1,692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306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49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추경)	2,240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9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42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5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17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485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63
				◦긴급복지지원사업	7,000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50
				◦기초연금 지급	33,75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29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17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6,623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215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57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33,00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4,519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1,724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11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031
				◦한국기독교 근현대역사관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237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08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	△600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	5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16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624
				◦전기차 보급	72,130
				◦수소차 보급	5,160

〈표 3-5B〉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 고 보 조 금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수소청소차 보급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운영보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자본보조)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청년중독관리사업(보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사업 산양번식장 보수 ◦응봉저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서울생활사 박물관 스마트 박물관 조성 ◦청계천 박물관 스마트 박물관 조성	△5,756 1,512 2,160 234 6 31 11 25 180 174,244 △417 838 △450 12 20 4 △174 100 100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보 조 금	38,961	193	39,154	◦마을기업 육성	193
기 금	220,747	16,373	237,12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공모사업 추가선정)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공모사업 추가선정) ◦문화재돌봄 ◦응급의료기관 지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7 61 434 291 49 1,174 239 △3 △110 △242 450

5)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내부거래**중 전입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3,211억 3,900만원)보다 △1,400만원 감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출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다함께돌봄사업(학교돌봄터 인건비)**(4,500만원)과 **다함께돌봄사업(학교돌봄터 설치비)**(△6,000만원)을 세입예산중 증·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6〉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세 외 수 입	1,802,489	85,736	1,888,226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323,613	100,275	1,423,889	◦공유재산임대료 △9,696 ·지하도 상가 임대료 등 △9,675 ·서울시 창작공간 임대료 △460 ◦도로사용료 △15,546 ·도로점용료 △15,546 ◦보건의료수수료 6,833 ·서북병원 의료사업수입 6,833 ◦배당금수입 60,000 ·SH공사 이익배당금 6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57,981 ·일반회계 여유자금 이자수입 57,981
임 시 적 세 외 수 입	470,999	△14,548	456,451	◦그외수입 △15,856 ·팬홀정비 청구수입 △11,954 ·지장물 이설비 △2,00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876	8	7,884	◦변상금 8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8
지 방 교 부 세	206,658	47,932	254,591	
지 방 교 부 세	206,658	47,932	254,591	◦보통교부세 51,649 ◦소방안전교부세 △3,716
보 조 금	6,087,774	350,260	6,438,035	
국 고 보 조 금 등	6,087,774	350,260	6,438,035	◦국고보조금 347,69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3 ◦기금 2,3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1,212	4,998,038	6,279,251	
보전수입등	960,073	4,998,053	5,958,127	◦순세계잉여금 946,444 ◦법정잉여금 4,054,766
내부거래	321,139	△14	321,124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13조 3,395억 4,900만원)보다 6.7%, 8,889억 3,900만원 증액된 14조 2,284억 8,9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7A〉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특별회계	13,339,549	888,939	14,228,489	
공기업특별회계	1,683,566	70,500	1,754,067	
수도사업특별회계	818,000	△619	817,380	◦상수도사용료수익 5,803 ◦타회계전입금수익 464 ◦순세계잉여금 △6,887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65,566	71,119	936,686	◦타회계전입금수익 △2,271 ◦순세계잉여금 73,391
기타특별회계	11,655,983	818,438	12,474,42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914,867	233,906	2,148,773	◦부담금 △7,000 ◦국고보조금 △1,291 ◦순세계잉여금 21,805 ◦기타회계전입금 236,854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6,300 ◦예탁금이자수입 △162
교통사업특별회계	1,847,832	359,432	2,207,265	◦기타사용료 △4,039 ◦부담금 5,161 ◦국고보조금 2,950 ◦순세계잉여금 68,143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624

〈표 3-7B〉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교 통 사 업 계 특 별 회 계	1,847,832	359,432	2,207,265	◦기타회계전입금 314,89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0 ◦예수금수입 △30,800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261,809	0	261,809	◦순세계잉여금 △20,247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59 ◦기타회계전입금 19,887
주 택 사 업 계 특 별 회 계	2,915,478	65,444	2,980,922	◦기금(국고보조금등) △27,605 ◦모집공채 △210,000 ◦순세계잉여금 155,914 ◦기타회계전입금 147,135
도 시 개 발 계 특 별 회 계	1,829,533	122,956	1,952,490	◦자치단체간부담금 300 ◦그외수입 3,958 ◦국고보조금 △2,700 ◦정부자금채 20,274 ◦모집공채 △12,220 ◦순세계잉여금 22,94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01 ◦기타회계전입금 89,602
균 형 발 전 계 특 별 회 계	159,161	3,034	162,19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0 ◦순세계잉여금 26,882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30 ◦기타회계전입금 △24,778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28,001	1,213	29,214	◦순세계잉여금 1,213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1,742,350	9,924	1,752,274	◦공공예금이자수입 860 ◦그외수입 411 ◦과징금 1,091 ◦순세계잉여금 7,560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36,209	△2,505	33,704	◦기금(국고보조금등) △1,806 ◦순세계잉여금 △1,229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30

〈표 3-7C〉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소 특 별 회 계	방 계	920,739	25,032	945,771	◦그외수입 183
					◦국고보조금 △7
					◦순세계잉여금 24,60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5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197
					◦기타회계전입금 △980

1) 잉여금에 대한 세입경정

-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인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 218억 5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733억 9,1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268억 8,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12억 1,300만원)의 경우에도 '2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편성 요청한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경우, '2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회계가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을 경정 요청한 바,
 - **주택사업특별회계**(1,559억 1,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681억 4,300만원), **소방특별회계**(246억 4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229억 4,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75억 6,000만원)는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 요청하고,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202억 4,7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68억 8,7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12억 2,9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8〉 순세계잉여금 결정 현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액 본기 반영 ①	'21회계연도 결산 세계잉여금 ②	추경·안감액 증요 ③
주택사업특별회계	103,262	196,270	155,914
교통사업특별회계	48,399	81,495	68,143
소방특별회계	15,258	39,862	24,604
도시개발특별회계	64,947	87,887	22,9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587	11,148	7,56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8,681	8,434	△20,247
수도사업특별회계	29,617	22,729	△6,887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751	521	△1,22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1회계연도 결산서」 및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다만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계정**(△629억 6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관리계정**(△43억 5,200만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306억 9,500만원)에서 각각 마이너스(-)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마이너스(-) 세계잉여금 발생은 결국 세수 결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22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시점까지 세수 결손이 치유되도록 '22회계연도중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세수 추계에 대한 정밀도를 높여 세수 결손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며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가용재원인바,

- 서울시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될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해당 회계연도 결산 이후 특별회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전년 11월, 다음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령은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와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수요가 발생될 경우, 추경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재정 여력에 한계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과정중 지적하고 있음에도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8개 특별회계에서 '22년도 세입예산안에 미리 편성한 사례가 있어,
-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은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

-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중앙정부가 당초 내시액을 증·감 변경통보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
- 국고보조금의 경우, 4개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을 증·감액편성을 요청한 바,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에 대한 국비 29억 5,000만원이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1,462억 3,6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29억 5,0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풍납토성 복원**에 대한 국비 △27억원 감액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815억 4,7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27억원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국비 △12억 9,100만원에 대해 세입예산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이고,
 - 소방특별회계는 **일반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비 △700만원에 대해 세입예산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9〉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46,236	2,950	149,186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 2,950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81,547	△2,700	78,847	◦풍납토성 복원 △2,7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118,464	△1,291	117,173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1,291
소 특 별 회 방 계	1,785	△7	1,778	◦일반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7

○ 국고보조금등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경우,

- **균형발전특별회계중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지원**에 대해 국비 △4억원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195억 1,2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4억원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국 가 균 형 발 전 특별회계보조금	19,512	△400	19,112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지원 △400

○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기금**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중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356억 6,200만원), **공공주택건설(추가 8만호)**(△231억 8,900만원),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48억 4,300만원)는 감액 통보되고, **청년 매입임대사업**(360억 9,000만원)은 증액 통보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276억 500만원을 증·감 편성 요청한 것이고,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중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보조금이 감액(△18억 600만원)통보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18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1〉 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금	888,599	△27,605	860,994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35,662 ◦공공주택건설(추가8만호) △23,189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4,843 ◦청년 매입임대사업 36,090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	31,958	△1,806	30,151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1,806 - 보조금

3)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경정

○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가 세외수입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기정예산(90억 6,400만원)보다 △70억원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 부담금 △70억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기정예산(4,477억 2,600만원)보다 11억 2,100만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40억 3,900만원)를 감액조정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 부담금(51억 6,100만원)을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기정예산(175억 7,800만원)보다 42억 5,800만원 증액요청한 것으로 **임시적세외수입**중 자치단체간부담금(3억원)과 그외수입(39억 5,800만원)을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기정예산(27억 9,100만원)보다 23억 6,3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예금이자수입(8억 6,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그외수입(4억 1,1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 과징금(10억 9,100만원)을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 소방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기정예산(19억 8,700만원)보다 1억 8,300만원 증액 조정 요청한 것으로 **임시적세외수입**중 그외수입(1억 8,300만원)을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표 3-12〉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9,064	△7,000	2,064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SH공사 부담금 △7,000
교통사업 특별회계	447,726	1,121	448,848	◦주차장 부대시설 등 사용료 (주차장관리계정) △4,039 ◦현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조성(교통개선분담금 계정) 3,280 ◦장지동길 교통체계 개선공사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881
도시개발 특별회계	17,578	4,258	21,836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관련 금천구 분담금 300 ◦지장물이설비(서울아레나) 2,008 ◦서울제물포터널 중첩구간 공사 및 정산 환급금 1,94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91	2,363	5,155	◦공공예금 이자수입 860 ◦그외수입 411 ◦과징금 1,091
소방 특별회계	1,987	183	2,170	◦빅데이터센터구축 183

4) 지방채에 대한 세입경정

- 지방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금번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지방채 세입예산을 증·감 조정 요청한 바,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채 세입예산을 기정예산(2,800억원)보다 △2,100억원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2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제잉여금 증가로 자체재원 투입은 늘리고 지방채발행을 줄이고자 **모집공채(공공주택건설 추가8만호)**(△500억원)와 **모집공채(재개발 임대주택 매입)**(△1,600억원)를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방채 세입예산을 기정예산(1,732억 2,000만원)보다 80억 5,4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정부자금채**(202억 7,400만원)를 증액조정하고, **모집공채**(△122억원)를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표 3-13〉 지방채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	280,000	△210,000	70,000	◦모집공채 △210,000 (공공주택건설 추가8만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173,220	8,054	181,274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274 ◦풍납토성 복원(지방채) △220 ◦양재대로 구조개선 △12,000

-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기편성된 지방채 세입예산액을 증·감편성 요청함에 따라 예산총칙중 공채발행 및 차입금 현황을 명시하고 있는 제4조도 연동하여 경정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4〉 예산총칙 제4조 경정 현황

'22년도 예산서(당초)	→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변경)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34,675,000천원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34,675,000천원
(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1,000,000천원		(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1,000,000천원
(3) 주택사업특별회계 <u>280,000,000천원</u>		(3) 주택사업특별회계 <u>70,000,000천원</u>
(4) 도시개발특별회계 <u>173,220,000천원</u>		(4) 도시개발특별회계 <u>181,274,000천원</u>

5)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세입경정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내부거래 세입예산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표 3-15A〉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내부거래	652,663	220,391	873,055	◦일반회계 전입금 236,854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6,3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2 - 통합계정 예탁금 - 이자수입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1,170,530	284,592	1,455,123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296,325 (교통관리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8,567 - 법정전입금(주차장관리계정)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500 - 인프라구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800 - 예수금(교통관리계정)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내부거래	0	19,887	19,887	◦일반회계 전입금 19,887
주택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1,115,652	147,135	1,262,787	◦일반회계 전입금 110,000 (국민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8,567 - 법정전입금(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18,567 - 법정전입금(재촉)
도시개발 특별회계	내부거래	1,446,483	89,602	1,536,086	◦재산세 도시지역분 89,602 - 법정전입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균특	형발전 별회계	내부거래	117,624	△24,778	92,845	◦일반회계 전입금	△24,778
소특	별회방 계	내부거래	894,145	△980	893,165	◦기타회계전입금	△980
						·지역자원시설세(소방정책사업비계정)	3,030
						·지역자원시설세(인건비계정)	1,298
						·소방안전교부세(소방정책사업비계정)	△4,011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계정)	1,631
						·일반회계전입금(인건비계정)	△2,930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추경예산안의 특징

- 서울특별시가 지난 7월 13일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 554개 사업을 증·감 조정 요청한 것으로
 - ①사업별설명서 작성이 생략되는 회계간 전출입 등 내부거래와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대해 증액요청한 90개 세부사업 외에도 ②신규사업 86개, ③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와 시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64개 세부사업과 ④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한 사업 247개, ⑤세출재원조정 등을 위해 감액요청한 67개 세부사업 등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나 시비 조정이 필요한 세부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증액요청한 세부사업, 세출재원조정 등을 위해 증·감 조정요청한 세부사업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추경안 편성 취지에 부합되는 사례로 사료됨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2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입잉여금에 대해 세입예산을 경정하고,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자 금번 '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4월,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결산전 순세입잉여금중 일부(7,355억 1,400만원)를 이입한 바,

- 금번 제출된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21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최종 반영하여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7,355억 1,400만원)보다 128.6%, 9,464억 4,400만원 증액된 1조 6,819억 5,8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서울특별시는 지난 '20회계연도와 '21회계연도에도 결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중 일부를 세입예산에 이입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한 특수성이 있으나, 향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추경편성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A〉 신규사업 편성현황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추경)	0	8,960	8,960
도시교통실	신림선 도시철도 재정지원	0	3,784	3,784
물순환안전국	하천토구 (우수토실) 구조개선 사업	0	3,500	3,500
도시교통실	현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0	3,280	3,280
도시교통실	지하철 안전 관리 강화 사업	0	2,700	2,700
도시교통실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 설치	0	2,600	2,600
미래청년기획단	청년 이사비 지원	0	2,255	2,255
주택정책실	사회 복지 기금 (주거 지원 계정)	0	2,000	2,000
도시교통실	가산 디지털 단 지역 혼잡도 개선	0	1,800	1,800
경제정책실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 보수 보강	0	1,600	1,600
경제정책실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조성 및 운영	0	1,260	1,260
안전총괄실	홍지문-정릉터널 비탈면 안전 시설 설치	0	1,200	1,200
복지정책실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0	1,142	1,142
물순환안전국	신월동 건교 싶은 거리 하수관로 정비	0	1,000	1,000
물순환안전국	면목로31길 42 주변 외 하수관로 개량	0	1,000	1,000
물순환안전국	강남역 강남대로 일원 하수관로 개량 공사	0	900	900
복지정책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0	793	793
기후환경본부	친환경 노면 청소 장비 보급	0	786	786
소방재난본부	중대 재해 없는 안전 보건 환경 조성	0	739	739
물순환안전국	가로공원로76길 91 외 1개소 노후 사각형 거 개량	0	710	710

〈표 4-1B〉 신규사업 편성현황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물 순환 안전국	상계동 940 일대 등 3개소 하수관로 개량	0	660	660
균형발전본부	청와대 주변 녹지 생태 가로 조성 및 옛물길 복원	0	600	600
균형발전본부	국가 상징 가로 조성 (청와대~서울역~용산~한강구간)	0	600	600
물 순환 안전국	양현관 앞(명륜길)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이설	0	600	600
물 순환 안전국	서초중앙로 72 일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	0	500	500
문화본부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 관 건립 지원	0	474	474
스마트도시정책관	디지털플랫폼 서울 구축	0	452	452
물 순환 안전국	면목천(중랑구) 준설 공사	0	439	439
복지정책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0	430	430
복지정책실	어르신 놀이터 조성	0	400	400
푸른도시국	서울공원 명소화 전략 기본계획 용역	0	400	400
푸른도시국	응봉근린공원(성동) 조성 - 금호산 지역	0	400	400
푸른도시국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0	400	400
물 순환 안전국	난계로 238 일대 외 1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0	380	380
물 순환 안전국	월계동 445 일대 등 2개소 하수관로 개량	0	360	360
경제정책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0	331	331
시민건강국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0	325	325
시민건강국	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0	320	320
물 순환 안전국	안양천(구로구) 자전거도로 정비	0	320	320
문화본부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지원	0	300	300

〈표 4-1C〉 신규사업 편성현황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시 민 건 강 국	서 울 형 공 공 병 원 건 립	0	300	300
물 순 환 안 전 국	한 빛 로 3 9 주 변 사 각 형 거 개 량	0	300	300
물 순 환 안 전 국	서대문역 1 번 출구 주 변 하 수 관 로 개 량	0	300	300
한 강 사 업 본 부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	0	288	288
물 순 환 안 전 국	도봉로 133길 40-10외 1개소 하 수 관 로 개 량	0	250	250
여성가족정책실	청 소 년 부 모 아 동 양 육 비 지 원 시 범 사 업	0	240	240
복 지 정 책 실	서 울 안 심 소 득 친 시 범 사 업 추 진	0	237	237
여성가족정책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추 가 지 원 (자 체)	0	233	233
복 지 정 책 실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 지원	0	216	216
물 순 환 안 전 국	홍 제 천 (마 포 구) 시 설 물 정 비	0	204	204
푸 른 도 시 국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0	200	200
물 순 환 안 전 국	CSOs 간이처리시설 수질개선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0	200	200
물 순 환 안 전 국	중 랑 천 (성 동 구) 보 행 로 안 전 펜 스 설 치	0	200	200
물 순 환 안 전 국	안 양 천 (구 로 구) 호 안 블 러 정 비	0	200	200
서울역사박물관	스 마 트 박 물 관 , 미 술 관 구 축 치 원	0	200	200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 스마트 박물관 구축	0	200	200
물 순 환 안 전 국	안 양 천 (금 천 구) 호 안 블 러 정 비	0	180	180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서 울 센 터 구 축	0	176	176
시 민 건 강 국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0	166	166
경 제 정 책 실	서 울 창 업 센 터 영 동 작 운 영	0	150	150

〈표 4-1D〉 신규사업 편성현황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시 민 건 강 국	공 공 재 활 병 원 건 립	0	150	150
안 전 총 괄 실	서 북 - 도 심 연 결 도 로 네트워크 개선 기본구상	0	150	150
도 시 교 통 실	청 와 대 주 변 자 율 주 행 버 스 운 행	0	140	140
한 강 사 업 본 부	지 천 합 류 부 만 남 의 광 장 조 성	0	140	140
재 무 국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 세 조 합 보 조	0	126	126
복 지 정 책 실	가 족 돌 보 청 년 을 위 한 사 회 서 비 스 지 원	0	120	120
물 순 환 안 전 국	중 량 천 (광 진 구) 산책로 안전펜스 설치	0	120	120
여성가족정책실	스 토 킹 피 해 자 지 원	0	103	103
문 화 본 부	태 고 종 영 산 재 지 원	0	100	100
물 순 환 안 전 국	중 량 천 (노 원 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0	100	100
물 순 환 안 전 국	중 량 천 (성 동 구) 자전거도로 안전 펜스 설치	0	100	100

〈표 4-2〉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한 사업 현황(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시 민 건 강 국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x17,960) 35,861	(x174,244) 348,488	(x192,175) 384,350
기 후 환 경 본 부	전 기 차 보 급	(x72,885) 116,651	(x72,130) 112,996	(x145,015) 229,651
복 지 정 책 실	장 애 인 활 동 지 원 사 업 - 활 동 지 원 급 여	(x242,947) 464,490	(x33,004) 59,404	(x275,951) 523,894
주 택 정 책 실	청 년 매 입 임 대 사 업	(x239,085) 344,085	(x36,090) 51,940	(x275,175) 396,025
복 지 정 책 실	기 초 연 금 지 급	(x2,390,974) 2,702,764	(x33,750) 37,406	(x2,424,724) 2,740,152
여성가족정책실	영 유 아 보 육 료 지 원	(x295,265) 548,215	(x7,751) 14,383	(x303,016) 562,599
복 지 정 책 실	장 애 인 거 주 시 설 운 영	(x38,893) 98,787	(x6,623) 13,247	(x45,516) 112,035
복 지 정 책 실	긴 급 복 지 지 원 사 업	(x20,103) 30,154	(x7,000) 10,500	(x27,103) 40,654
기 후 환 경 본 부	수 소 차 보 급	(x13,470) 20,186	(x5,160) 8,760	(x18,630) 28,946
복 지 정 책 실	장 애 인 활 동 지 원 사 업 - 활 동 보 조 가 산 급 여	(x1,481) 2,491	(x4,519) 7,574	(x6,000) 10,066
여성가족정책실	어 린 이 집 보 육 교 직 원 인 건 비 지 원	(x113,332) 330,577	(x3,390) 5,476	(x117,023) 336,054
복 지 정 책 실	청 소 년 발 달 장 애 인 방 과 후 활 동 서 비 스 지 원	(x2,500) 5,000	(x1,724) 3,448	(x4,224) 8,448
복 지 정 책 실	근 로 능 령 있 는 수 급 자 의 탈 수 급 지 원	(x12,287) 18,282	(x2,031) 3,143	(x14,319) 21,426
도 시 교 통 실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	(x-) 3,320	(x2,950) 2,950	(x2,950) 6,270
기 후 환 경 본 부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x2,800) 5,600	(x2,160) 2,700	(x4,960) 8,300
기 후 환 경 본 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x7,200) 12,000	(x1,512) 2,520	(x8,712) 14,520
시 민 건 강 국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x2,316) 5,019	(x838) 1,817	(x3,155) 6,836
여성가족정책실	어 린 이 집 보 육 교 직 원 처 우 개 선 지 원	(x21,947) 135,349	(x678) 1,788	(x22,625) 137,137
시 민 건 강 국	응 급 의 료 기 관 지 원	(x4,347) 5,054	(x1,174) 1,258	(x5,522) 6,312
기 후 환 경 본 부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x1,218) 1,604	(x624) 766	(x1,843) 2,37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x1,828) 2,538	(x434) 713	(x2,263) 3,251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x13,047) 18,027	(x667) 681	(x13,715) 18,708

〈표 4-3〉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한 사업 현황(△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주 택 정 책 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x220,575) 279,080	(△x35,662) △60,388	(x184,912) 218,692
주 택 정 책 실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x43,711) 110,958	(△x23,189) △23,189	(x20,521) 87,768
기 후 환 경 본 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x13,137) 22,550	(△x5,756) △10,184	(x7,381) 12,366
주 택 정 책 실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x9,035) 9,035	(△x4,843) △4,843	(x4,192) 4,192
여성가족정책실	아 동 수 당 지 원	(x296,317) 434,598	(△x3,036) △4,453	(x293,280) 430,144
도 시 교 통 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x4,785) 15,951	(△x1,291) △4,304	(x3,494) 11,647
문 화 본 부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x66,280) 94,685	(△x2,649) △3,784	(x63,630) 90,901
경 제 정 책 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x5,460) 7,098	(△x2,421) △3,148	(x3,038) 3,950
여성가족정책실	첫 만 남 이 용 권 지 원	(x42,406) 69,112	(△x1,692) △2,764	(x40,714) 66,348
문 화 본 부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x800) 2,140	(△x600) △1,200	(x200) 940
시 민 건 강 국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x2,711) 5,422	(△x417) △834	(x2,294) 4,588
복 지 정 책 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x1,638) 2,457	(△x485) △728	(x1,152) 1,728
여성가족정책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x1,146) 1,638	(△x306) △438	(x840) 1,200
문 화 본 부	도 봉 문 화 정 보 도 서 관 별 관 건 립 지 원	(x400) 400	(△x400) △400	(x-) -
물 순 환 안 전 국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x174) 348	(△x174) △348	(x-) -
문 화 본 부	국 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x33,944) 49,081	(△x208) △297	(x33,736) 48,784
시 민 건 강 국	의 료 관 련 감 염 병 감 시 및 예 방 관 리	(x723) 723	(△x242) △242	(x481) 481
시 민 건 강 국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 국가 예방 접 종 실 시	(x40,005) 86,677	(△x110) △239	(x39,894) 86,438
복 지 정 책 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x63) 127	(△x63) △127	(x-) -

〈표 4-4A〉 기존사업 증액 편성현황 (2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행 정 국	조 정 교 부 금	3,906,413	1,143,580	5,049,993
평 생 교 육 국	지 방 세 전 출	1,626,814	539,814	2,166,628
도 시 교 통 실	시 내 버 스 서 비 스 개 선	483,810	330,000	813,810
평 생 교 육 국	지 방 교 육 세 전 출	1,966,277	258,579	2,224,856
재 무 국	시 세 징 수 교 부 금	475,142	165,053	640,196
도 시 교 통 실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200,000	150,000	350,000
재 무 국	재 정 보 전 금	1,866,943	92,131	1,959,074
안 전 총 괄 실	자 치 구 장 기 미 집 행 도 로 실 효 대 응 재 정 지 원	13,308	60,000	73,308
안 전 총 괄 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35,578	25,953	61,531
평 생 교 육 국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57,188	24,012	281,201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99,224	21,990	121,214
도 시 교 통 실	지 하 역 사 공 기 질 개 선	54,415	15,697	70,112
도 시 교 통 실	마 을 버 스 서 비 스 개 선	35,850	15,000	50,850
기 후 환 경 본 부	전 기 차 충 전 인 프 라 구 축	17,895	13,151	31,046
도 시 교 통 실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6,557	12,289	28,846
주 택 정 책 실	청 년 월 세 지 원	53,109	12,000	65,109
주 택 정 책 실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69,208	11,502	80,7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권 경전철 건설(민자)	90,662	10,807	101,469
시 민 건 강 국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3,522	10,333	13,855
시 민 건 강 국	의 료 급 여 사 업	1,739,471	9,924	1,749,396

〈표 4-4B〉 기존사업 증액 편성현황 (2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1,600	8,715	10,315
소방재난본부	소방활동지원	21,577	8,282	29,859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31,688	7,754	39,44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8,375	7,660	16,035
관광체육국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50,381	7,100	57,481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77,144	6,925	184,069
도시교통실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22,166	6,418	28,585
물순환안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5,475	6,000	21,475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16,409	5,900	22,309
균형발전본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7,600	5,500	13,100
안전총괄실	한강상교량 연결로 구조개선 (올림픽대로 남단)	10,616	4,980	15,596
안전총괄실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4,183	4,545	28,728
물순환안전국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1,500	4,430	5,930
안전총괄실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2,000	4,300	6,300
안전총괄실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5,124	3,500	8,624
공공개발기획단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5,862	3,272	9,134
기획조정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84,411	3,122	87,533
도시교통실	가공배전선 지중화	35,330	3,116	38,446
경제정책실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17,168	3,086	20,255
복지정책실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2,559	2,914	5,474

〈표 4-4C〉 기존사업 증액 편성현황 (2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물 순환 안전국	중량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보수보강	15,876	2,900	18,776
물 순환 안전국	서남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보수보강	18,450	2,780	21,230
물 순환 안전국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7,260	2,740	10,000
주택정책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5,700	2,570	8,270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8,235	2,502	10,737
물 순환 안전국	분뇨·탈수분야 유지보수 및 개량	500	2,400	2,900
안전총괄실	노후 포장도로 정비	77,044	2,350	79,394
물 순환 안전국	센터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6,710	2,300	9,010
소방재난본부	소방차량 유지관리	4,206	2,127	6,333
경제정책실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5,230	2,122	7,352
도시교통실	시도 보도 유지관리	15,262	2,075	17,337
문화본부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2,571	2,006	4,577
안전총괄실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5,020	2,000	7,020
균형발전본부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2,100	2,000	4,100
균형발전본부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2,250	2,000	4,250
물 순환 안전국	탄천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6,889	2,000	8,889
물 순환 안전국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48,330	2,000	50,330

〈표 4-5〉 기존사업 감액 편성현황 (2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안 전 총 괄 실	월 드 컵 대 교 건 설	75,263	△28,000	47,263
복 지 정 책 실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제 도 시 행 분 담 금	241,288	△15,029	226,258
안 전 총 괄 실	양 재 대 로 구 조 개 선	22,000	△12,000	10,000
안 전 총 괄 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 환 경 공 간 조 성	11,492	△8,992	2,500
소 방 재 난 본 부	소 방 합 동 청 사 건 립 사 업	11,406	△8,282	3,124
도 시 교 통 실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45,778	△7,773	38,005
안 전 총 괄 실	성 산 대 교 성 능 개 선	9,858	△7,000	2,858
물 순 환 안 전 국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11,554	△6,414	5,140
물 순 환 안 전 국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8,086	△6,000	2,086
행 정 국	지 방 선 거 관 리	42,164	△3,324	38,840
안 전 총 괄 실	탄 천 변 동 측 도 로 확 장 (교 통 개 선 분 담 금 계 정)	5,000	△3,200	1,800
복 지 정 책 실	보 훈 대 상 자 등 지 원	70,581	△2,880	67,701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수도계량기 검사설비 현대화	2,386	△2,339	47
물 순 환 안 전 국	환 경 기 초 시 설 설 치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5,489	△2,261	3,228
물 순 환 안 전 국	차 집 관 로 성 능 개 선	5,788	△2,198	3,59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 급 생 계 비 지 원	3,000	△2,078	921
시 민 협 력 국	지 역 사 회 혁 신 계 획 (구 단 위 계 획 형) 지 원	15,675	△2,012	13,662
주 택 정 책 실	서 울 형 주 거 취 약 계 층 주 거 상 향 지 원	2,990	△2,000	990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은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의결('22. 4)된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제1조)과 공채발행 및 차입금(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제7조)를 수정한 것으로,
 -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 편성요청함에 따라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과 일반회계 예비비를 연동하여 조정하였으며,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추진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증·감하여 경정을 요청한 것임
- 예산총칙중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의 경우에는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45조 4,325억 5,400만원을 52조 1,841억 6,70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45조 8,132억 5,900만원)보다 6조 3,709억 800만원 증액된 52조 1,841억 6,700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총액도 연동하여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총칙중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의 경우, 2개 특별회계에 대해 발행액을 경정요청하는 것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 발행액(2,800억원)보다 △2,100억원을 감액한 700억원으로 경정요청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 발행액(1,732억 2,000만원)보다 80억 5,400만원 증액한 1,812억 7,400만원으로 경정요청한 것임

〈표 4-6〉 예산총칙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 경정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본 예 산	제 1 회 추 경	증 감 액	제2회추경안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34,675	1,134,675	-	1,134,67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1,000	121,000	-	121,000
주택사업특별회계	280,000	280,000	△210,000	7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173,220	173,220	8,054	181,274

- 서울특별시는 예산총칙 제4조와 연동하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채에 대해서도 2개 특별회계, 5개 세부사업을 경정요청하였음

〈표 4-7〉 '22년도 제2회 추경안 특별회계 세입중 지방채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세 부 내 역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추 경 (안)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280,000	△210,000	70,000
모 집 공 채	공공주택건설 추가8만호	50,000	△50,000	0
"	재 개발 임대 주택 매 입	160,000	△160,000	0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73,220	8,054	181,274
정 부 자 금 채	가 락 동 농 수 산 물 도 매 시 장 시 설 현 대 화	-	20,274	20,274
모 집 공 채	풍납토성 복원 (지방 채)	23,220	△220	23,000
"	양 재 대 로 구 조 개 선	21,000	△12,000	9,000

-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경안을 통해 기정예산의 세출예산을 경정함에 따라 예산총칙중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에도 경정을 요청한 바,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①일반예비비 1,190억 3,700만원과 ②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포함한 1,390억 3,700만원에 대해 ①일반예비비를 기정예산(1,190억 3,700만원)보다 63억 1,100만원 증액한 1,253억 4,8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검토됨

〈표 4-8〉 예산총칙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본 예 산	제 1 회 추 경	증 감 액	제2회추경안
일 반 회 계 예 비 비		139,025	139,037	6,311	145,348
①	일 반 예 비 비	119,025	119,037	6,311	125,348
②	목 적 예 비 비	20,000	20,000	-	20,000

-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일반예비비는 회계 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는 바,
- 제출된 추경안의 예산총칙중 일반회계 일반예비비(1,253억 4,800만원)는 일반회계 예산총액(37조 9,556억 7,800만원)의 0.3%에 해당되어 한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경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1,453억 4,800만원)는 당초 본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1,390억 3,700만원)보다 4.5%, 62억 1,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액(37조 9,556억 7,800만원)을 기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액(32조 4,437억 900만원) 대비 16.9%, 5조 4,819억 6,9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예비비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된 것임
- 다만, 지난 6월 서울특별시의회가 승인한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따르면, '21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1,509억 4,600만원)중 59.5%, 897억 7,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결정된 예비비중 867억 6,700만원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번 제2회 추경안에 편성요청된 예비비의 편성규모가 과소편성으로 사료되지 않음

3. 법정경비 등의 정산

- 관련 법령은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대해 ① 지방세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정산금,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 ③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에 대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④지역자원시설세중 특정 부동산 증수분에 대한 전출금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산하였음
- 이번 회기에 제출된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21회계연도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5조 8,712억 100만원)에 대해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1조 4,007억 6,5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8,224억 700만원), ③타회계 전출(1,496억 3,400만원) 등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 2조 3,728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서울시 조례는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5조 8,712억 100만원에서 법정의무경비(2조 5,072억 8,600만원)를 제한 3조 3,639억 1,500만원중 50%인 1조 6,819억 5,8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고자 세출예산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세계잉여금(5조 8,712억 100만원)중 ①법정의무경비(2조 5,072억 8,600만원)와 ②재정안정화 계정 적립(1조 6,819억 5,800만원)후 남게되는 1조 6,819억 5,800만원에 대해 결산전인 '22년 4월,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항목에 7,355억 1,400만원을 세입예산에 이입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9,464억 4,4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9〉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용처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액	비고
계			5,001,211	
법 정 의 무 경 비 계			2,372,810	
	자 치 구 정 산 금	소 계	1,400,765	'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41억 500만원 기편성
		조 정 교 부 금	1,143,580	
		재 정 보 전 금	92,131	
		시세 징수교부금	165,053	
	교 육 청 전 출 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소 계	822,407	
		지 방 세 전 출	539,814	
		담배소비세전출	24,012	
		지방교육세전출	258,579	
	타 회 계 전 출 (교육비특별회계전출 제외)	소 계	149,634	
		도시개발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89,602	'21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증 수액 1,856억 중 70% 에 대한 부족분 추경반영
		주택사업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37,135	'21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증 수액 1,856억 중 20% 추경반영 (도정계정, 재촉계정 각 10%)
		교통사업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18,567	'21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액 1,856억 중 10% 추경 반영
		소 방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4,329	「지방세법」 제142조 「지방교부세법」 제9조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조례」 제4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1,681,958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가 용 재 원 사 용 (순 세 계 잉 여 금)			946,444	'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7,355억 1,400만원 기편성

4.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여성가족정책실

□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1권, p.14)

- 동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①통합 BI 및 사업별 BI 개발 (5,000만원), ②홍보 동영상 제작 및 캠페인 추진(2,000만원), ③정책자문단 회의수당(3,0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 현행 법령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바, 동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이후 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제출함

〈표 4-10〉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100
		◦ (가칭)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브랜드 개발		50
		- 통합브랜드 BI 개발	20,000,000원×1식	
		- 사업별 BI 개발 및 제작	10,000,000원×3개	
		◦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캠페인 추진		20
		- 홍보 동영상 제작	15,000,000원×1식	
		- 캠페인 운영	2,500,000원×2회	
		◦ 정책자문단 회의 수당	200,000×50명×3회	30

- 편성 요청된 사무관리비중 ①통합 BI 및 사업별 BI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은 민간 전문기관 용역발주를 통해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여 육아가 행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적극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그동안 통합 브랜드의 부재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과 육아활동 존중에 대한 시민체감도 및 참여도를 저하시킨 주된 요인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브랜드 개발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을 변경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재고(再考)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홍보가 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 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공공부문의 경우,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이 정책효과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경을 통한 브랜드 개발이 시급한 현안인지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22)

- 동 사업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피해자를 신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①리모델링 비용(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원)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②전문상담사 운영 및 ③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4,300만원)를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4-11〉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총						계		103	
사		무		관		리		비	
		◦ 전문상담사 운영						28	
		- 200,000원×10회×14명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5	
		- 5,000,000원×3개 프로그램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	
								자	
								체	
								재	
								원	
								)	
								60	
		◦ 안전시설 설치, 집기류 등 리모델링						60	
		- 15,000,000원×2개소 + 30,000,000원×1개소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본부·국 등의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로 ①사무관리비, ②공공운영비, ③국내·외 여비, ④자산 및 물품취득비, ⑤업무추진비 등을 “기본경비”로 예시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난 '21년 7월, 행정안전부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의 범위에 속해야 할 것”으로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예시 사례를 적시하여 회신한 바,
- 사무관리비는 결국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 한정되고, 사무관리비에 대한 지출대상도 공무원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예산과목이라는 점에서 사무관리비로 ②전문상담사 운영(2,800만원)과 ③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1,500만원)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편성사례로서 적정 예산과목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56)

- 동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보건복지부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통보함에 따라 민간시설(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구립시설(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금(8,7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8,7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2〉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총 계				175
민 간 위 탁 금				87
◦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마포) - 175,840,000원×1개소×시비 50%				87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87
◦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구립) - 175,840,000원×1개소×시비 50%				87

- 서울시 조례는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총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민간시설과 구립시설 각 1개소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지난 '20년 9월,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2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통보된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포함된 것이 아니기에 서울시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민간위탁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관련 조례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부서로서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정부가 통보한 시범사업에 대해 민간위탁동의를 다시 얻는 것에 대해 시간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기존 위탁사무에 대한 중요사항변경에 해당되나 정부 매칭사업으로 발생한 부득이한 변경인 점 등을 고려하여 편성 요청된 민간위탁금(8,700만원)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조례중 정부매칭 사업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논란의 실익이 낮은 필수지원 사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스마트도시정책관

□ 디지털플랫폼 서울 구축 (사업별설명서 1권 p.179)

- 동 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서울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4억 4,200만원)가 포함된 4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4-13〉 디지털플랫폼 서울 구축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총						계	454
	사	무	관	리	비	12	
	◦ 제안서 평가, 전문가 자문 등					12	
	연	구	용	역	비	442	
		◦ 디지털 플랫폼 서울 구축 정보화 전략 수립(ISP)					442

- 서울시의 규칙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 예산을 편성요청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전까지의 추진가능한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예산에 한정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 사업부서의 사업별설명서 등에 따르면 동 편성요청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비(연구용역비 4억 4,200만원) 전액을 확보하여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단계부터 일부 예산에 대한 이월이 전제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의 소요예산은 이월을 전제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에 대해 일부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4〉 자료별 사업 추진일정

구	분	추진기간	추진세부내용
사업별설명서 ^{주1)}		'22. 9 ~ '23. 2	'디지털 플랫폼 서울' 구축 추진전략 수립
사업부서방침 ^{주2)}		'22. 9 ~ '23. 2	디지털 플랫폼 서울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예산타당성 심의결과서 ^{주3)}		'22. 9 ~ '23. 2	'디지털 플랫폼 서울 구축'의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

주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권, p.181

주2)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23641 ('22. 7. 6) “디지털 플랫폼 서울 구축 정보화전략(ISP) 수립 계획”

주3)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담당관-25630 ('22. 7.12) “2022년 정보화사업 수시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중 붙임 1. 예산타당성심사결과서

3) 미래청년기획단

□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204)

- 동 사업은 만19세~39세 청년 가구중 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자 ①사회보장적수혜금 20억원과 ②청년 이사비 지원 운영 용역 1억 6,000만원, ③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및 자문 등 회의비 9,500만원이 포함된 사무관리비 2억 5,5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5〉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총						계		2,255	
사		무		관		리		비	
		◦ 청년 이사비 지원 운영 용역						160	
		- 160,000,000원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및 자문 등 회의비						95	
		- 95,000,000원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 청년 이사비 지원						2,000	
		- 400,000원×5,000명						2,000	

-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중 ②청년 이사비 지원 운영 용역(1억 6,000만원)의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용역사를 선정하여 '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 신청, 접수지원, 민원응대, 참여자 주거실태 현황분석 등의 청년 이사비 지원 운영 용역을 수행하고자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예산과목인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표 4-16〉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내용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2년 1월~12월 ※ 이사비 선정 및 지급은 11월 ○ 지원대상 : ①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가구 - 22년 기준 만 19세~39세 (1982년~2003년생),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자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②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③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 ※ 제외기준 ▪직계존속(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서울로 전입후 중앙부처 및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이사비(운반비+포장비 등)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자료근거 : 미래청년기획단-24863 ('22. 7. 8),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예산과목에 해당되나, 지난 '21년 7월, 행정안전부가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예시 사례를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회신한 바 있고,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도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즉,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세출과목으로 명시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편성 사례처럼 사무관리비의 부적절한 편성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바, ②청년 이사비 지원 운영 용역(1억 6,000만원)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

하는 예산과목으로 오해하여 사무관리비를 부적절하게 편성한 사례일 수 있으나

-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에 해당되는 편성사례로 오인편성할 여지가 낮을 것으로 사료됨
-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갖는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현상일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현행 기준이 동 편성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용역”에 대한 세출과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에도 유사 부적정 편성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사료됨

4) 소방재난본부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소송 관련

- 인력운영비 (사업별설명서 1권, p.238)
- 소방활동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234)

○ 소방재난본부 소관 동 사업은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제소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22년 6월,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30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이 필요한 수당(휴게 및 비번 활동시간) 703억원중 ① 재직자 미지급 수당(217억 9,300만원)과 ②퇴직 및 전출자 미지급 수당(82억 8,200만원)을 포함하여 301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7〉 추경안중 초과근무수당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추 경 안
인 력 운 영 비	보 수	503,030	21,793 ^{주1)}	524,824
소 방 활 동 지 원	배 상 금 등	-	8,282 ^{주2)}	8,282

※ 주1) 소방공무원(재직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주2) 소방공무원(퇴직, 전출자 등)미지급 초과근무수당

○ 행정1심 인용판결에 따라 서울시가 지급하여야 하는 소요액은 1,000억원이나 공동근무수당분(297억원)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항소(2022. 6. 9)하여 금번 추경안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휴게 및 비번 활동시간 미지급 수당(703억원)중 300억 7,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4-18〉 판결 결과 미지급 수당(공동근무 포함) 지급 소요액

(단위: 억 원 / 기준일: 2022.06.20.)

소송구분 (7,888명)		휴게 및 비번 활동시간 미지급 수당 (‘10.1.~’12.9.)			공동근무 수당 (‘06.12.~’17.5.)		
		소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계	1000	703	500	203	297	207	90
소송자	237	153	101	52	84	58	26
미제소자 (화해자포함)	763	550	399	151	214	149	64
행정 1심 소송 결과		지급 필요					
소송 진행 사항		항소 x			항소		
추경안 편성액		301			-		

- 다만, 서울시가 항소한 부분(공동근무수당분)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유사 사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소송 등 진행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699억원)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됨

5) 복지정책실

□ 보훈단체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381)

- 동 사업은 지난 '22년 3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서울시지부가 신규 설립됨에 따라 사무공간 임대료 및 사무집기 구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실 임대료(9억 5,000만원)와 사무집기 구입 지원(2,000만원) 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9〉 보훈단체 지원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총			계	970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	자	체	재
	원	)		970
	◦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		950
	◦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 사무집기 구입 지원		20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조례 또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및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서울시지부의 사무공간 임대료 및 사무집기 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 편성 요청된

9억 7,000만원중 사무실 임대료 9억 5,000만원은 관련 단체의 사무실 계약방식(월세/전세 등)에 따라 유동성이 있어 향후 전용이나 변경을 통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편성 요청된 사무공간 임대료의 경우, 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예산 집행 단계에서 관련 단체와 전세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나
- 예산집행 단계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장애 발생 등으로 추진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 방침 수립이나 협의문 등을 통해 추진 방식 등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적정 통계목으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의료급여사업 (사업별설명서 1권 p.402)

- 동 사업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 의료급여 진료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국비와 시비를 50:50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고자 기정예산(1조 7,394억 7,100만원)보다 99억 2,400만원 증액된 1조 7,493억 9,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0〉 의료급여사업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총			계	9,924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9,924
		◦ '2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세입증액분 반영		9,924
		- 순세계잉여금		7,560
		- 공공예금이자수입, 과징금 수입 및 기타수입		2,363

□ **보람일자리 사업** (사업별설명서 1권 p.435)

○ 복지정책실 소관 **보람일자리 사업**은 50+세대에게 사회공헌일 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190억 6,000만원)보다 3억 3,400만원(사회복지사업보조)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123명의 ‘어르신 식사지원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사업 홍보, 모집공고, 참여자 선발 등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4-21〉 추경안 편성현황 (보람일자리 사업)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19,060	334	19,395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16,498	334	16,833	○ 활동비 322 - 655천원x123명x4개월 ○ 상해보험료 3 - 30천원x123명 ○ 교육실비 3 - 15천원x123명x2회 ○ 사업운영비 5 - 선발심사비, 회의운영비,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50	-	50	
시 책 추 진 업무추진비	6	-	6	
자 치 단 체 경상보조금	2,506	-	2,506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 50+세대에게 사회 공헌형 일 자리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조례에도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 출연기관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만 명시되어 있어 편성 요청된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 재원이전이 가능한 예산과목인지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 현행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사업재원으로 출연금만 명시되어 있어 서울시가 동 재단에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현행 조례만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에서 재단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을 수행도록 계획하고, 소요 예산을 편성할 경우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상 사업재원에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별설명서 1권, p.457)

- 복지정책실 소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서울시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7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2〉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총						계		793	
사		무		관		리		비	
		◦ 평가위원 심의수당						3	
		- 3,000,000원						3	
전		산		개		발		비	
		◦ 시스템 개발						514	
		- 514,826,000원						76	
		◦ 감리비						65	
		- 76,222,000원						133	
		◦ 개인정보 영향평가비							
		- 65,876,000원							
		◦ HW 및 SW 구매							
		- 133,130,000원							

○ 동 사업은 '23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 및 관련 방침을 검토하면, “추진일정”과 “사업기간”을 '22년 7월부터 '23년 4월까지로 기재하고 있어 '22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결과 예산액 조정 결정(△ 2억 1,500만원)이 있었음에도 편성액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사업의 실질적인 근

거가 되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앞서 조례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금번 추경안을 통해 먼저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23년 7월로 예정되어 관련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하여도 시스템구축 또한 조례에 근거할 수 밖에 없어 선(先) 시스템 구축 ·후(後) 사업의 근거 조례 개정'이라는 논란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문화본부

□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사업별설명서 1권, p.672)

- 동 사업은 기정예산(28억 200만원)보다 55.3%, 15억 5,000만원 증액한 43억 5,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2억원을 증액하고, 노들섬 재구조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순증하여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3〉 소요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 경 안	비고
계	2,802	1,550	4,352	
사 무 관 리 비	878	1,200	2,078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관리 - 1,200백만원
민 간 위 탁 금	1,859	0	1,859	
시 설 비	0	350	350	◦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 350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5	0	65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사무관리비로 증액요청된 12억원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관련 사업비 및 시설 관리운영비(추가 소요분) 편성’으로만 기재하여 제출되었으나

- 관련 방침에는 사무관리비 12억원을 인건비(1억 2,300만원), 운영비(1억 7,600만원), 사업비(9억원)로 계획하고, 사업비의 세부내역 또한 ① 노들뮤직페스티벌(3억 6,000만원), ②노들섬야간공연(4억 2,000만원), ③전시연계프로그램(1억 2,000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 운영비(1억 7,600만원)의 경우, 전기, 수도요금을 비롯한 시설관리용역에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의 적정 편성 사례로 사료됨

○ 그러나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①노들뮤직페스티벌(3억 6,000만원)과 ②노들섬야간공연(4억 2,000만원)은 사실상 행사성 경비로서

-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준을 통해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표 4-24〉 사무관리비중 행사성 경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무 관 리 비		예산안
노 들 류 직 페 스 티 벌		360
페 스 티 벌 운 영 (1 0 월)		280
◦ 인건비 :	뮤지션 개런티, 연출료, 현장운영 인건비 외	200
◦ 운영비 :	무대제작 및 공간조성비	70
	회의비 및 기타 진행비	4
	홍보물 제작비(포스터, 사인물 외)	5
◦ 홍보비 :	온라인 홍보비(문자, SNS 외)	1
노 들 버 스 킹 (1 0 ~ 1 2 월)		80
◦ 인건비 :	뮤지션 개런티 (20팀×10회×400,000원)	80
노 들 섬 야 간 공 연		420
8 ~ 9 월 야 간 공 연 (올 뻘 미 공 연)		210
◦ 제작비 :	무대제작비, 악기 및 장비 렌탈비, 공간조성비 외	30
◦ 인건비 :	뮤지션 개런, 연출료, 현장운영 인건비 외	170
◦ 홍보비 :	홍보인쇄물 제작비, SNS 홍보비, 온라인 광고비 외	10
11~12월 야간공연(Nodeul & Night페스타)		210
◦ 제작비 :	무대제작비, 악기 및 장비 렌탈비, 공간조성비 외	30
◦ 인건비 :	뮤지션 개런, 연출료, 현장운영 인건비 외	170
◦ 홍보비 :	홍보인쇄물 제작비, SNS 홍보비, 온라인 광고비 외	10

□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 미술관 무료관람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744)

- 동 사업은 서울지역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 차량,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3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관련 방침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 계획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바 있고,
- 행정안전부의 기준 또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에 해당되는 세출과목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편성 사례처럼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서울지역 특수학교 학생에게 박물관 입장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기 보다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정하여 편성·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미 추경예산안이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세출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정할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제출된 세출과목(사무관리비)을 수정하게 되면 ‘先예산확보 後절차이행’이라는 모순이 발생되어 세출과목을 수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행정국

□ 조정교부금 (사업별설명서 1권 p.873)

- 행정국 소관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제도로,
 - 조정교부금의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 재정부족액 부족분에 대해 월별로 교부되며, 나머지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수시 지원되는 재원임
 - 법정경비에 해당되는 조정교부금은 결산결과에 따라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금번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기정예산(3조 9,064억 1,300만원)보다 29.2%, 1조 1,435억 8,000만원 증액된 5조 499억 9,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①'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조정교부금 예결산 차액 1조 2,376억 8,500만원중 지난 ②'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기 반영한 941억 500만원을 제한 ③1조 1,43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5〉 조정교부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본 예산 (A)	제1회추경 (B)	증 감 (C - B)	제2회추경안 (C)	산출내역
3,812,308	3,906,413	1,143,580	5,049,993	①'21회계연도 조정교부금 예결산 차액 1,237,685 - ②'22년도 제1회 추경 기반역액 94,105 = ③'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 1,143,580

8) 재무국

□ 재정보전금 (사업별설명서 1권 p.897)

○ 재무국 소관 **재정보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정격차를 해소하고자 특별시분 재산세의 100%를 25개 자치구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사업으로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기정예산(1조 8,669억 4,300만원)보다 4.9%, 921억 3,100만원 증액된 1조 9,590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공동재산세 전출금에 대해 ①'21년 결산액(1조 7,375억 5,700만원)이 ②'21년 당해연도 예산액(1조 6,454억 2,600만원)보다 초과 징수되어 ③초과징수분에 대한 미지급분(921억 3,100만원)을 추경을 통해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6〉 조정교부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A)	증 감 (B - A)	제2회추경안 (B)	산	출	내	역
3,812,308	1,143,580	5,049,993	①'21년 결산액	1,737,557		
			- ②'21년 당해연도 예산액	1,645,426		
			= ③초과징수분에 대한 미지급분('21년도)	92,131		

□ 시세 징수교부금 (사업별설명서 1권 p.905)

○ 재무국 소관 **시세 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매월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납입한 시세에 대하여 납입액의 3%를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법정경비로

- '21회계연도 세입예산 대비 초과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22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여야함에 따라, '21회계연도 정산분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기정예산(4,751억 4,200만원)보다 1,650억 5,300만원 증액된 6,401억 9,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7〉 시세 징수교부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A)	증 감 (B - A)	제2회추경안 (B)	산 출 내 역
475,142	165,053	640,196	①'21년도 세입에 대한 징수교부금 산출액 572,431 - ②'21년도 기 지급액 407,378 = ③'21년도 미지급액 165,053

9) 평생교육국

□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

- 지방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2권, p.911)
- 담배소비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2권, p.914)
- 지방교육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2권, p.917)

○ 관련 법령은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 전출금의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세 전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시세 총액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초과분을 정산하고자 기정예산(1조 6,268억 1,400만원)보다 33.1%, 5,398억 1,400만원을 증액된 2조 1,666억 2,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담배소비세 전출**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지난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초과분을 정산하고자 기정예산(2,571억 8,800만원)보다 9.3%, 240억 1,200만원을 증액된 2,812억 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교육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교육세 총액을 전출하는 것으로 지난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방교육세 수입이 초과수납되어 기정예산(1조 9,662억 7,700만원)보다 13.1%, 2,585억 7,900만원을 증액된 2조 2,248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8〉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 감 륜	추경예산안
지 방 세 전 출	1,626,814	539,814	33.1	2,166,628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57,188	24,012	9.3	281,201
지 방 교 육 세 전 출	1,966,277	258,579	13.1	2,224,856

※ 자료근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p.269

10) 시민건강국

□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사업별설명서 2권, p.990)

-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은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연	구	용	역	비
				300
			○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300,000,000원 x 1회	300

-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은 서초구 원지동에 6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000억원 규모로 확인되며
 - 금번 추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료원(서울형 공공병원) 설립 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권역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나 서울시 조례 및 서울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술용역은 예산 편성 전에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침은 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주된 과업내용이 조직·인력 구성 등 운영에 관련한 기본구상 내용이 더 많을 경우” 학술용역에 해당되어 사전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총사업비 규모가 4,000억원인 동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

기 위해 용역비 3억원을 편성 요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점('22. 7.13)까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타당성 조사의 개괄적인 과업내용 조차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편성 요청된 용역비가 학술용역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회계연도중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제한된 채 사업별설명서만 제출되어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 서울시 치매연수원 건립 (사업별설명서 2권, p.1065)
-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사업별설명서 2권, p.1077)
- 자치구 동물보호사업 지원 (사업별설명서 2권, p.1065)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 치매연수원 건립** 사업은 치매전문 통합교육연구기관인 서울시 치매연수원 설립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통계 분석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4-3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50
○ 서울시 치매연수원 설립 컨설팅 용역 - 50,000,000원×1회					50

-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컨설팅 용역, 운영대행용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지출하고자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 행정안전부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예시 사례를 회신한 바 있고,
- 행정안전부의 기준 또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에 해당되는 세출과목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컨설팅용역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편성 사례로 판단됨

○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이 장기 외출할 경우 반려동물의 방치 및 유기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4억 6,200만원)보다 1억 7,200만원 증액된 6억 3,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표 4-3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총				계172
사	무	관	리비	122
	◦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 200,000원×10명×1회			2
	◦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 60,000원×10일×200마리			120
민간경상사어보조				50
	◦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지원 - 50,000,000원×1식			50

-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7월 13일)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사무관리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용역의 유형은 물론 세부 사업내용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사무관리비를 통해 대행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라는 점에서 동 사업이 지출하고자 하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예산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 보조금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며,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할 경우라도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여 세출과목 수정을 통한 편성오류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치구 동물보호사업 지원**의 경우에도 반려견 동반 가능한 민간시설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지출가능한 안내표지판은 공공청사의 배치나 개별 부서를 안내하는 표지판이며 동 사업이 계획하는 안내판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인바, 이미 '22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문화본부 소관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한강사업본부 소관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안내판을 시설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출내용					예산안
	사무관리비				15
		◦ 반려견 대기장소(거치대 등 형태) 및 동반 출입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 5,000,000원×3곳			15

11) 주택정책실

□ 일반회계사업의 기금 전출 부적정 사례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별설명서 2권, p.1291)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사업별설명서 2권, p.1308)

○ 일반회계에 편성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증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초 2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보증금 지원 방식을 현금지원에서 용자로 변경함에 따라 기정예산(29억 9,000만원)중 △20억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하여 보증금을 용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0억원(기금전출금)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3〉 보증금 변경에 따른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안	산출내역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990	△2,000	990	○ 보증금 현금지원액 △1,000,000원*2,000가구 2,000
기금전출금	-	2,000	2,000	○ 임대보증금 용자 1,000,000원 x 2,000가구 2,000

※ 자료근거 : '22년도 제2회 추경안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은 당초 ①보증금, ②이주비, ③생필품 등을 지원하고자 편성된 사업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존 ①보증금은 **사회복지기금**중 용자성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나, ②이주비, ③생필품 지원은 여전히 일반회계에 편성된 기존사업 즉,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표 4-34〉 일반회계 사업을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으로 분리

(단위 : 백만원)

당 초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일반회계)	
	예산액 2,990	
	①보증금 (현금지원액 : 1,000천원×2,000가구)	2,000
	②이주비 ③생필품	990



추 경 안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일반회계)		+	사회복지기금 (기금)		
	예산액 990			예산액 2,000		
	-			① 보증금 : 2,000 - 용자 (1,000천원×2,000가구)		
	◦ 인건비	312		-		
	- 3,000천원×26개소×4개월					
	◦ 사업비	678				
	정착지원	363				
	- 14,500천원×25개소					
		이주비·생필품 지원		300		
		- 500천원×600가구				
◦ 운영비	15					
	- 620천원×25개소					

- 관련 법령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 또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일반회계사업에 편성된 ①보증금 △ 20억원을 전액 감액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기금전출금을 편성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벗어난 사안은 아닐 것이나

- 향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반영할 경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운용사례가 될 수 있어 해당 기금운용계획중 지출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일반회계 사업에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은 사업방식을 기존 현금지원에서 융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보장제도변경 관련 사전협의 등 절차적 요건 또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2) 푸른도시국

□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별설명서 2권, p.1437)

- 동 사업은 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①팝업모험 놀이터 운영 2억 4,000만원과 ②테마가 있는 공원여행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5〉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예산(안) 산출내역 중 행사운영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2년도 본예산	제2회 추경안 증·감액	제2회 추경안
계	327	290	617
기존 계속사업	◦ 시민주도 테마축제 95	- -	95
	◦ 시민이 누리는 문화예술 150	- -	150
	◦ 시민학습 및 참여활동 82	- -	82
신규 행사성 사업	- -	① ◦ 팝업모험 놀이터 운영 240	240
	- -	② ◦ 테마가 있는 공원여행 50	50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1개 세부사업에 다수의 행사성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어 관련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36〉 행사·축제예산 사업구조화 예시

□ 행사·축제예산은 세부사업 별도 구분

○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

<예시>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된 경우

【현 행】

【개 선】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부기명 1) 00예술제
(부기명 2) 00연극제
(부기명 3) 0000페스티벌
(부기명 4) 0000기념행사
(부기명 5) 000한마당



(정책사업)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 1) 00예술제
(세부사업 2) 00연극제
(세부사업 3) 0000페스티벌
(세부사업 4) 0000기념행사
(세부사업 5) 000한마당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1. 7), p.83

□ 예산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업별설명서 2권, p.1442)
- 서울공원 명소화 전략 기본계획 용역 (사업별설명서 2권, p.1446)
- 서울 아래숲길 조성 (사업별설명서 2권, p.1466)
-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설명서 2권, p.1476)

○ 푸른도시국 소관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은 응봉근린공원(대현산 배수지 공원)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시설비 14억원을 증액요청한 것임

- 사업별설명서중 “2022년도 추진일정”에는 ’22년 11월부터 ’23년 4월까지 13억원을 투입하여 응봉근린공원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 회계연도중 용역이 준공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됨에도 추경안을 통해 공사 용역비 전액(13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예산편성단계부터 이미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푸른도시국 소관 **서울공원 명소화 전략 기본계획 용역**은 공원별 특색에 맞는 문화, 체험, 휴식 콘텐츠를 탑재한 서울형 랜드마크 공원명소 조성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설비** 4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내용”과 “2022년도 추진일정”에는 ’22년 8월부터 ’23년 3월까지 8개월간 4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사업부서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기 위해 ’22년 7월,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출한 심사요청서에는 관련 용역을 ’22년 8월부터 5개월간 4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회신한 결과통보 공문에도 용역기간이 5개월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별설명서의 내용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어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실제 소요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푸른도시국 소관 **서울 아래숲길 조성**은 지하철 역사, 지하보도 등 하부 유휴공간에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사업별설명서중 “사업계획”과 “2022년도 추진일정”에는 ’22년 9월부터 ’23년 5월까지 2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월이 전제된 예산으로 판단됨

- 푸른도시국 소관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은 변화하는 산림여가 수요에 대응하고자 산림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여가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4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내용”과 “2022년도 추진일정”에는 ‘22년 9월부터 ‘23년 6월까지 4억원을 투입하여 산림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산림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에도 ‘22년 9월부터 ‘23년 6월까지 10개월간 4억원을 투입하여 현황·여건 분석,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 기본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편성단계부터 이월이 전제된 사업으로 판단됨

〈표 4-37〉 이월이 전제된 세부사업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제2회 추경안	사 업 기 간
무 장 애 친 화 공 원 조 성	1,400	’22.11. ~ ’23. 4. (6개월)
서울공원 명소화 전략 기본계획 용역	400	’22. 8. ~ ’23. 3. (8개월)
서 울 아 래 숲 길 조 성	200	’22. 9. ~ ’23. 5. (9개월)
산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조성	400	’22. 9. ~ ’23. 6. (10개월)

- 예산의 이월은 어디까지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산 집행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 예산의 이월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검토

1) 수도사업특별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예산은 기정예산(8,180억원)보다 △6억 1,900만원 감액된 8,173억 8,0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발생규모가 '2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추계액보다 감소되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편성된 수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68억 8,700만원 감액조정 요청하고,
 - 영업수익중 사용료 수익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에 대한 수도사용량 증감추이를 반영하여 **상수도사용료수익**을 58억 300만원 증액하고,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 아리수 정수센터 정수비용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6,400만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4-38〉 세입예산 목별조서 (세항 증·감내역으로 한정)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기정예산액	증감	추경예산안
계					△619	
상 수 도 사 용 료 수 익				618,176	5,803	612,372
◦ 가정용				34,854	△12,092	360,947
◦ 일반용				269,321	17,895	251,425
타 회 계 전 입 금 수 익				22,417	464	21,953
◦ 타특별회계전입금				22,417	464	21,953
순 세 계 잉 여 금				22,729	△6,887	29,617
◦ 순세계잉여금				22,729	△6,887	29,617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수입보다 △6억 1,900만원 감액조정 요청하는 것이나 유보자금 즉,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68억 8,700만원 감액조정 요청한 바,

- 유보자금(순세계잉여금 △68억 8,700만원)이 계정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1)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부(負, negative) 편성되지 않으나, 유보자금이 계정과목에 포함되는 (2)자본예산과 (3)예산총계의 경우, 부(負) 편성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계정과목중 수도요금 등의 사용료수익을 반영할 수 없거나 사용료수익 증대 즉, 요금인상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22년도 세출예산은 이월액 감소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총칙의 경우에는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경우에도 기정예산과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총칙 제14조를 통해 회계연도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금, 기타보조금 등을 간주처리 하도록 하고 있음
- 더불어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자본예산에는 유보자금(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나 (1)사업예산은 이를 제외하고 있어 사업예산의 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나 예산총칙 제4조를 통해 자본적 지출액 대비 수입액 부족금액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수·지 불균형이 상쇄될 것으로 사료됨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1)사업예산은 51억 6,000만원, (2)자본예산은 3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확인됨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기정예산(8,180억원)보다 △ 6억 1,900만원 감액된 8,173억 8,0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투자사업비와 경상사업비중 일부 사업을 증·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9〉 수도사업특별회계 증·감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안
정 수 센 터 시 설 정 비	50,279	(x-) 801	(x2,170) 51,080
배 수 지 등 정 밀 안 전 진 단 점 검 및 시 설 정 비	7,421	800	8,221
아 리 수 생 산 재 료 비 (동 력 비)	55,519	464	55,983
수 도 계 량 기 검 사 설 비 현 대 화	2,386	△2,339	47
미 아 배 수 지 건 설 공 사	345	△345	-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예산은 기정예산(8,655억 6,600만원)보다 711억 1,900만원 증액된 9,366억 8,6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제잉여금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과목으로 733억 9,1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하고,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이전하는 전출금 규모가 기정 예산보다 △22억 7,100만원 감액편성되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도 연동하여 감액조정하고자 타특별회계지원금을 △22억 7,100만원 감액 요청한 것임

〈표 4-40〉 세입예산 목별조서 (세항 증·감내역으로 한정)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기정예산액	증감액	추경예산안
계					71,119	
타 회 계 전 입 금 수 익				25,777	△2,271	23,505
◦ 타특별회계전입금				20,047	△2,271	17,775
순 세 계 잉 여 금				0	73,391	73,391
◦ 순세계잉여금				0	73,391	73,391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수입보다 711억 1,9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하는 것으로 유보자금 즉,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733억 9,1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 유보자금(순세계잉여금 733억 9,100만원)이 계정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1)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부(負, negative)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유보자금이 계정과목에 포함됨에도 (2)자본예산은 부(負) 편성되고 있어 수·지 균형에 보다 주의하여 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21회계연도 결산시 회계연도중 집행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 이월규모를 축소하고 불용처리한 것이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 확대요인으로 사료되어 향후에도 적극적인 회계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41〉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계	96,684	120,340	233,846
사 고 이 월	92,828	103,888	166,784
건설개량이월	3,856	16,452	67,062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칙의 경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경우에도 기정예산과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또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총칙 제14조를 통해 회계연도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간주처리 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예산총칙 제4조를 통해 자본적 지출액 대비 자본적 수입액 부족금액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하도록 명시하여 수·지 불균형이 상쇄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예산총칙 제4조의 명문은 국어문법적 문제도 있어 보다 용이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편성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르게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는 바,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의 형태로 구분하여 (1)사업예산은 11억 5,800만원, (2)자본예산은 2억 4,0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확인됨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기정예산(8,655억 6,600만원)보다 711억 1,900만원 증액된 9,36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중 일부 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2〉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신규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하천토구(우수토실) 구조사개선 사업	0	3,500	3,500
신 정 네 거 리 역 주 변 노 후 하 수 관 로 정 비 공 사	0	1,070	1,070
신 월 동 건 고 싶 은 거 리 하 수 관 로 정 비	0	1,000	1,000
면 목 로 3 1 길 4 2 주 변 하 수 관 로 개 량	0	1,000	1,000
강 남 역 강 남 대 로 일 원 하 수 관 로 개 량 공 사	0	900	900
가 로 공 원 로 7 6 길 9 1 외 1 개 소 사 각 형 거 개 량	0	710	710
상 계 동 9 4 0 일 대 등 3 개 소 하 수 관 로 개 량	0	660	660
양 현 관 앞 (명 룬 길) 사 유 지 통 과 설 하 수 관 로 이 설	0	600	600
서 초 중 앙 로 7 2 일 대 외 2 개 소 하 수 관 로 개 량	0	500	500
난 계 로 2 3 8 일 대 외 1 개 소 노 후 하 수 관 로 정 비 공 사	0	380	380
월 계 동 4 4 5 일 대 등 2 개 소 하 수 관 로 개 량	0	360	360
한 빛 로 3 9 주 변 사 각 형 거 개 량	0	300	300
서 대 문 역 1 번 출 구 주 변 하 수 관 로 개 량	0	300	300
도 봉 로 1 3 3 길 4 0 - 1 0 외 1 개 소 하 수 관 로 개 량	0	250	250
CSOs 간이처리시설 수질개선 시범사업 기 본 및 실 시 설 계	0	200	200

〈표 4-43A〉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증액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	20,000	29,646	49,64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77,144	6,925	184,069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5,475	6,000	21,475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1,500	4,430	5,930
중량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보수보강	15,876	2,900	18,776
서남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보수보강	18,450	2,780	21,230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7,260	2,740	10,000
분뇨·탈수분야 유지보수 및 개량	500	2,400	2,900
센터 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6,710	2,300	9,010
탄천하수관로 하수처리구역 보수보강	6,889	2,000	8,889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48,330	2,000	50,330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1,500	1,700	3,200
수처리분야 유지보수 기계설비 및 개량	7,100	1,600	8,700
노후 불량 해수맨홀 정비	1,850	1,450	3,300
신월3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2,200	1,000	3,200

〈표 4-43B〉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증액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소방 및 중대재해시설 유지보수	1,000	1,000	2,000
수처리분야 계측기 유지관리	1,260	1,000	2,260
군자-2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1,700	800	2,500
화곡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 정비	2,400	700	3,100
차집관로 보수공사	11,100	500	11,600
난지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보수보강	31,696	400	32,096
농축 및 소화설비 유지보수	3,600	300	3,900
수처리분야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1,240	240	1,480
소방 및 중대재해시설 유지보수	300	200	500
오금로36길 일대 오수관로 개량	316	150	466

〈표 4-44〉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감액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8,086	△6,000	2,086
환경기초시설 설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489	△2,261	3,228
차집관로 성능개선	5,788	△2,198	3,590
당현천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	2,970	△1,690	1,280
물산업 미니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1,700	△1,600	100
불광천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	2,672	△1,412	1,260
은평구 관내 하수관로 성능 향상 사업	4,400	△1,000	3,400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1,420	△910	510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2,200	△900	1,300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12,079	△500	11,579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 방안 용역	800	△300	500

V. 기타 검토 의견

□ 출자·출연동의가 필요한 사업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1권, p.396)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별설명서 1권, p.529)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별설명서 1권, p.533)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별설명서 1권, p.537)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별설명서 1권, p.544)
-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사업별설명서 1권, p.551)
-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사업별설명서 1권, p.561)
-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사업별설명서 1권, p.564)
-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사업 (사업별설명서 1권, p.570)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1권, p.645)
-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1권, p.651)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2권, p.936)
-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1권, p.175)
-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사업별설명서 1권, p.797)
-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사업별설명서 1권, p.332)
- 청년 매입임대 사업 (사업별설명서 2권, p.1294)
-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사업별설명서 2권, p.1299)

- 소요예산중 출자 또는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금번 제311회 임시회중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12개 세부사업과 관련된 5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표 5-1〉 '22년도 제2회 추경안 관련 출자·출연 동의와 관련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22년도 제2회 추 경 안 출 자·출 연 금	의 안 명 (의 안 번 호)	회부일	의결일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1,278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 연 동 의 안 (의 안 번 호 2 4)	'22. 7.14	'22. 7.25
도시교통실	지 하 철 1 ~ 4 호 선 노 후 시 설 재 투 자	1,000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 자 동 의 안 (의 안 번 호 2 7)	'22. 7.14	'22. 7.25
도시교통실	지 하 철 5 ~ 8 호 선 노 후 시 설 재 투 자	961			
도시교통실	지 하 철 역 승 강 편 의 시 설 설 치	12,289			
도시교통실	지 하 역 사 공 기 질 개 선	15,697			
도시교통실	가 산 디 지 털 단 지 역 혼 잡 도 개 선	1,800			
도시교통실	지 하 철 전 동 차 내 C C T V 설 치	△3,013			
도시교통실	지 하 철 승 강 장 자 동 안 전 발 판 시 범 설 치	2,600			
도시교통실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사업	2,700			
문 화 본 부	세 종 문 화 회 관 출 연 금	62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 5)	'22. 7.14	'22. 7.25
문 화 본 부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24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 6)	'22. 7.14	'22. 7.25
관광체육국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7,10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 8)	'22. 7.14	'22. 7.25
스 마 트 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293	서울특별시 서울디지털재단 출 연 동 의 안 (의 안 번 호 3 1 5 3)	'22. 3. 16	원안 가결 ('22. 4. 8)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5,90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 자 동 의 안 (의 안 번 호 3 2 1 6)	'22. 5.27	원안 가결 ('22. 6.21)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은 ①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설립운영(6억 1,800만원), ②금융취약청년 재기성공 지원사업 추진(6억 6,000만원) 사업을 위해 출연금 12억 7,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소요예산중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동 출연과 관련된 출연 동의안이 지난 13일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출연동의안의 경우, 도시교통실 소관 8개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금 340억 3,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사업중 ①**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는 '22년 국비(237억 200만원)에 대한 매칭시비(276억 5,300만원) 부족분 1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②**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9억 6,100만원, ③**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22억 8,900만원, ④**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56억 9,700만원, ⑤**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18억원, ⑥**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30억 1,300만원, ⑦**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26억원, ⑧**지하철 안전관리 강화사업** 27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 다만,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의 경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30억 1,300만원으로 감액요청한 것이나 관련 동의안 중중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는 81억 5,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증감액과 추경예산안을 일부 혼돈한 단순 오기로 사료되나, 의회가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혼선이 초래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5-2〉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과 관련된 8개 사업 출자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중 사업별 출자금 증감액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중 사업별 출자금 증감액
출 자 금 계		45,200	34,034
도시교통실	①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000	1,000
도시교통실	②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961	961
도시교통실	③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2,289	12,289
도시교통실	④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	15,697	15,697
도시교통실	⑤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1,800	1,800
도시교통실	⑥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8,153	△3,013
도시교통실	⑦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2,600	2,600
도시교통실	⑧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 사업	2,700	2,700

※ 자료근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및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재구성

- 그 외에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출연금 6억 2,100만원을 편성하고 출연금 편성을 위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은 출연금 2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관련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출연금 7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지난 13일, 동 출연금 편성을 위한 관련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서울디지털재단 출연**의 경우에는 출연금 2억 9,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지난 4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며,
 - **서울에너지공사 지원**의 경우에도 출자금 59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지난 5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소요예산중 출자 또는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령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이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5-3〉 주택정책실 소관 출자 동의안 미제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증 감	출 연 기 관
청년 매입임대사업 (출자금)	(x275,175) 396,025	(x239,085) 344,085	(x36,090) 51,940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출자금)	(x184,912) 218,692	(x220,575) 279,080	(x△35,662) △60,388	서울주택도시공사

※ 자료근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동 편성 사례의 경우, 정부가 사업유형방식을 신흥에서 청년으로 변경하고, 국비지원액을 증·감하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흥부부 매입임대 사업**은 시비(출자금) 편성규모를 축소하고, **청년 매입임대 사업**은 출자금 규모를 증액 요청한 것임
- 사업부서로서는 동 사업에 편성된 출자금의 증감요인이 국비 증감에 따른 것으로 이미 '22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로부터 관련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출자금 편성에 따른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출자·출연을 위한 의회의 사전 의결이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과는 별개로 출자·출연 자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지난 '15년도에 출자·출연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며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법령과 관련된 기준을 배부한 바,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령의 무 출연을 모두 포함“으로 명시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도의 경우, 서울디자인재단은 두 번의 추경안 편성에 앞서 「출연 동의안」을 각각 제출한 사례가 있어 지난해 '22년도 본예산에 한정된 「출자 동의」를 얻은 사실만으로 출자금 편성요청과 관련된 별도의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규를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됨

〈표 5-4〉 '20회계연도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증액 편성 현황(추경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의안 제출일 (출연 동의안)	의안 가결일 (출연 동의안)	편성 사유
서울디자인재단출연금 ('20년도 제3회 추경)	'20. 5.25	'20. 6.3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DDP 대관 및 임대 수익 손실 보전
서울디자인재단출연금 ('20년도 제4회 추경)	'20. 8.12	'20. 9.1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DDP 대관 및 임대 수익 손실 보전

- 아울러 **청년 매입임대 사업**(158억 5,000만원),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247억 2,600만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 출연금 사례와 함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임
 - 관련 법령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①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며, ③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 자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년도 예산 제도인 바,
 - 「2022~2026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것으로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1개)와 특별회계(12개), 기금(17개)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 지난 '21년 11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2~2026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성된 것이나, 의회의 심의를 거쳐 '22년도 예산이 수정의결되었고, '22년 4월,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도 수정의결된 바 있어 「2022~2026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기정예산보다 6조 3,709억원 증액된 52조 1,841억원으로 경정요청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표 5-5〉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22년도 예산안) (A)	' 2 2 년 도 본 예 산 (의 회 의 결)	' 2 2 년 도 제 1 회 추 경 (의 회 의 결)	' 2 2 년 도 제 2 회 추 경 예 산 안 (B)	증 감 (B - A)
총 계		44,074,847	44,219,048	45,432,554	52,184,167	8,109,320
	일반회계	31,228,080	31,342,459	32,246,992	37,955,678	6,727,598
	특별회계	12,846,766	12,876,588	13,185,561	14,228,489	1,381,728

- 다만,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의결결과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기간 불일치되는 결과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중 본예산 의결후,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세입·세출 변동결과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기한, 수정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법령이 추경예산안 제출시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이어 금번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도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 제출이 생략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정예산을 증·감 조정하면 성과계획서와 성

인지예산서에 대한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행 법령 등이 성과계획서와 성인지 예산서의 변경방법이나 의회 제출 및 승인 등의 절차가 부재하여 수정시기와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도록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